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	
	보고	2018. 5. 11.(금) 조간	배포	2018. 5. 10.(목)
담당부서	특별조사국 정보화전략실	윤동인 국장(3145-5100), 최동헌 팀장(3145-5105) 소현철 실장(3145-5370), 류길상 팀장(3145-5430)		

제 목 : 6.13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

– 「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」 구축 완료, 5월부터 본격 가동

1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,
 - 그 일환으로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「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*」을 구축하고,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음

* 테마주의 형성·소멸일, 분류사유, 관리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형성일 이후 현재까지의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를 진단하는 시스템

- 또한, 6.13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의 준동과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
 -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정밀 감시체계를 확립하고,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,
 -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,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 특별조사반을 설치·운영할 계획임

II. 「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」 구축

가.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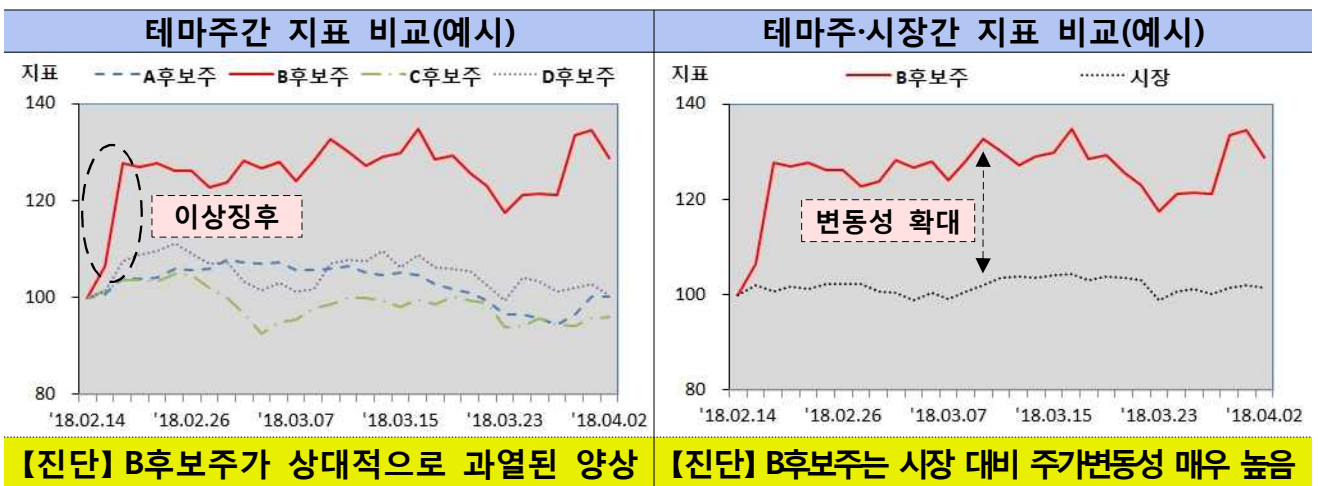
- 다양한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빠르게 형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테마주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 필요

나. 주요 내용

- **(종합정보)** 테마주간, 테마주·시장간 지표*의 비교분석을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테마주를 한눈에 선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

* 테마주 지표 : 각 테마주 구성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을 지수화(테마주 형성일:100)
 시장 지표 : KOSPI, KOSDAQ 지수의 평균을 지수화(테마주 형성일:100)

- 테마주 이상징후에 대한 조기 인지와 신속 대응이 가능해짐



- **(상세정보)** 테마주 구성종목의 주가·거래량·공시·뉴스·관리내역 등 테마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One-stop 조회하도록 함으로써

- 테마주 모니터링 및 조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음

- **(유지관리)** 테마주 기본정보(형성·소멸일, 분류사유) 및 관리이력 등을 시스템 기반으로 기록·유지함으로써 관리의 연속성이 확보됨

- ◆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테마주 정밀 감시체계 확립
- ◆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조사착수 및 엄정조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
- ◆ 지능화·복잡화된 범죄단서 확보를 위한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 운영
- ◆ 테마주 이상징후가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경우 특별조사반 설치·운영

가.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테마주 정밀 감시체계 확립

- 「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」을 통해 주요 정치테마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이상급등 종목을 조기에 적출하고,
 - 적출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전체 매매데이터를 징구하여 ‘현미경식 매매패턴 분석’^{*}을 통하여 조사여부를 판단함
 - * (예시) 이상매매가 나타난 혐의계좌를 찾은 다음, 해당 혐의계좌와 동일종목·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한 숨겨진 또 다른 혐의계좌를 발굴
- 증권계시판, 주식카페 및 SNS 등 다양한 정보 유통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풍문유포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임

나. 신속한 조사착수 및 엄정조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

-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착수 및 집중조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,
 - 필요시 긴급조치(Fast-Track)를 통해 검찰에 즉시 이첩할 계획임
- 실제로 최근 정치테마주 종목에서 단주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 혐의^{*}를 발견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중임
 - * 주계좌(매매차익 용도)·보조계좌(시세조종 용도)가 함께 종목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을 하면서 부당이득 취득

<참고> ^①금감원의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및 ^②최근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 사례

① 금감원의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

○ 테마주 전담팀* 신설('12.1월) 이후 테마주 175개 종목에 대해 조사 실시

* '12.1. 테마주 특별조사반(T/F) → '13.5. 테마주기획조사팀 → '13.8. 테마기획조사팀 → '18.2. 테마조사팀 ('13.8. 소속변경 : 자본시장조사1국 → 특별조사국)

○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102명에 대해 검찰 고발·통보,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완료, 조치대상자의 부당이득 합계는 총 965억원

금감원의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('12.1월 ~ 현재)

조치대상 종목수	조치수준별 조치대상자수					부당이득금액
	검찰 고발(a)	검찰 통보(b)	과징금 부과(c)	경고 (d)	계 (a+b+c+d)	
108개	28명	52명	2명	20명	102명 ^{주)}	965억원

주) 유형별(명) : 일반투자자(41), 당해회사 임직원(32), 전업투자자(16), 주요주주 및 관련자(11), 기타(2)

② 최근 정치테마주(A사) 시세조종 혐의 사례 (2018년 ○월 ◇일 10:19 ~ 10:22)

① (先 매수) 10:19 주계좌를 이용하여 A사 주식 10,000주 매수

② (시세 조종) 10:19 ~ 10:22 보조계좌를 이용하여 시장가로 1주씩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가며 각각 250회 주문제출(총 500회 즉시 매매체결)

※ HTS 호가창이 약 3분 동안 500번 깜박깜박하면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보이면 매수세가 유입되어 시세가 상승하였음

③ (차익 실현) 10:22 주계좌를 이용하여 전량(10,000주) 매도하여 매매차익 실현

A사 주식 주가그래프(2018년 ○월 ◇일 10:19 ~ 10:22)



다.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 운영(제보기간: '18.5.10. ~ 6.13.)

-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형이 점차 지능화·복잡화됨에 따라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
 - 제보시에는 종목, 위반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 불공정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(증거자료를 보유한 경우 함께 제출)
 - 제보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*을 지급하고 있음
- * 최고 20억원 범위내 지급, '17년 포상금 지급규모 : 5명에 대해 총 8,727만원 지급

< 참고 > 증권불공정거래 제보방법(금융감독원)

- ◆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(www.cybercop.or.kr)
 - ◆ 전 화 : 콜센터) 1332 → 4번 → 3번
특별조사국(정치테마주) 02-3145-5128, 5143
조사기획국(기타종목) 02-3145-5556, 5573, 5582
 - ◆ 우 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(또는 조사기획국)
(우편번호 07321)
- ※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
라. 특별조사반 운영(필요한 경우)

- 정치테마주 이상징후가 광범위하게 지속될 경우 특별조사국 내에 「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*」을 설치·운영할 예정임
- * 현재의 테마조사팀(특별조사국)을 특별조사반으로 전환, 조사·분석 인력 확대 편성

IV.

투자자 유의사항

□ 투자자들은 테마주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- ① 테마주는 기업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무분별한 추종매수시 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
- ②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, 정확한 사실*에 근거하여 신중한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

*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(kind.krx.co.kr)

- ③ 허위사실·풍문을 유포*하거나 시세에 관여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

* (예시)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계시판 등에 회사와 정치인과의 연관성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 게시

- ④ 불공정거래 등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 혹은 대가를 수수하고 증권·은행계좌를 대여*하는 행위도 처벌대상**이 될 수 있음

* 최근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증권계좌를 주식 시세조종에 이용한 사례 확인

**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,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V.

기대 효과

□ 금감원은 「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」의 구축·운영으로

- 테마주 모니터링 및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,
- 이상징후 테마주에 대한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통해 그간 테마주에 편승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행해오던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□ 아울러, 「6.13 지방선거 대응방안」의 마련·시행으로

- 정치테마주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장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,
-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□ 앞으로도 금감원은 각종 테마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,

-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